



금속노조 202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합의

25일, 11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안 서명 ... 금속 최임 시급 9,970원·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7개 항 신설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.

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. 금속노·사는 이날 본 교섭 정회 직후 축소교섭을 여러 차례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했다.

노·사는 21시 14분쯤 본 교섭을 속개해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음을 상호 확인하고, 합의안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각각 서명했다.

중앙교섭 통일요구 ▲금속산별협약 21조 2항 신설은 ‘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,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·직종·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’로 합의했다.

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▲금속산업 최저임금은 ‘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,970원과 월 통상임금 2,253,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. 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’라고 합의했다.

중앙교섭 요구 중 ▲‘금속산별협약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 7개 항 신설’은 ‘① 회사는 중대

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, 작업중지 범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(임시)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.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.

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조사기관, 조사인력, 조사일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.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.

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출하고,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.

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,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

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.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·의결한다.

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회사는 조합, 수급인, 수급인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, 보건 점검을 실시한다.

⑦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선정 및 조치 등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’ 등 조항에 합의했다.

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견접근 안에 서명한 뒤 교섭 마무리 인사말에서 “매년 교섭 의견접근 때마다 노·사 상호 간에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” 라면서 “올해 상황은 예년과 다른 것 같다. 특히,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 노동조합은 대단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교섭이다”라고 소회를 밝혔다.